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5 (목)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11. 26(월)
- 다. 상정일자 : 2007. 12. 04(화)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 및 이의신청 기간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우수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9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
- 2) 수도사용요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안 제33조)
 -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
- 3) 우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안 제40조)
- 4)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안 제44조)
- 5) 기타 개정사항

- 조례명을 현행 법령제명 띄어쓰기방식으로 수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제2항을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주거와 영업활동을 함께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요율적용을 받고 있으나,
- 실제 수도사용과는 관계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약국, 통신·판매업 등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등 수도사용량이 많은 사업장과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조세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공평과세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조례에 반영하였음.
- 또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제안에 관한 규정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2007.10월말 현재 38.3%의 누수율을 좀더 낮추기 위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 기타 현행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도록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였음.

다. 결과적으로

- 요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도행정의 추진

을 도모하고 일부 내용을 관련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 및 이의신청 기간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우수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9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세대당 월 15세제공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
- 나. 수도사용요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안 제33조)
 -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
- 다. 우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안 제40조)
- 라.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안 제4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 : 실시(2007. 8. 31 ~ 9. 20)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도급수조례”를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효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 중 “기간”을 “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제44조제1항중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명 평창군수도급수조례</u></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생략)</p> <p><u>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산정한다.</u></p> <p>③~④(생략)</p> <p>제33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u>기간</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생략)</p> <p>1.~3.(생략)</p> <p><u>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명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u></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현행과 같음)</p> <p><u>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효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공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u></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33조(가산금 등) ①----- ----- ----- ----- <u>100분의 3</u> ----- ----- ----- <u>기관</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u>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u></p>

현행	개정안
<p>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u>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u>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u>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44조(이의신청) ① ----- ----- ----- <u>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u> ----- -----</p> <p>②----- <u>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u>----- -----.</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